

##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1. 주식회사 효성은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1 에 의거 2018 년 4 월 27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섬유/무역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효성티앤씨 주식회사를 설립하고, 중공업/건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효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, 산업자재 사업부문(안양사업장 관련 사업부문 제외)을 분할하여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, 화학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효성화학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며(이하 효성티앤씨 주식회사, 효성중공업 주식회사,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, 효성화학 주식회사를 각 “분할신설회사”라 함), 주식회사 효성은 분할 후에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- 다 음 -

구분	회사명	사업부문	분할비율
분할회사 (분할존속회사)	주식회사 효성	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	0.3928289
분할신설회사	효성티앤씨 주식회사	섬유/무역 사업부문	0.1232345
	효성중공업 주식회사	중공업/건설 사업부문	0.2655246
	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	산업자재 사업부문 (안양사업장 관련 사업부문 제외)	0.1275704
	효성화학 주식회사	화학 사업부문	0.0908416

2. 위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한 후 효성화학 주식회사는 2018 년 6 월 1 일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 530 조의 11 및 동법 제 527 조 4 항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### 1. 분할의 내용

(1)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섬유/무역 사업부문, 중공업/건설 사업부문, 산업자재 사업부문(안양사업장 관련 사업부문 제외), 화학 사업부문(각 “분할대상부문”이라 함)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신설회사로 설립하고,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며,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됨.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분할존속

회사는 변경상장하고, 각 분할신설회사는 각 재상장 함. (18.7.13일 예정)

(2)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본건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함.

(3)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,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분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.3928289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,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증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함.

(4)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내용

- 상호: 효성화학 주식회사 (영문명 : Hyosung Chemical Corporation)
- 본점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(반포동)
- 대표이사: 박준형
- 주식에 관한 사항
  - 발행할주식의 총수: 200,000,000주
  - 주당액면가액: 5,000원
  - 발행주식총수: 보통주식 3,190,126주
  - 주식의 배정: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하며, 그 비율은 보유한 주식 1주당 0.0908416주임
  - 1주미만 단주는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초일의 증가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함
- 자본금: 15,950,630,000원
- 결산기: 매 사업연도 12월 31일. 다만,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.

**【 본건 분할 내용 】**

구분	회사명(영문명)	사업부문
분할회사 (분할존속회사)	주식회사 효성 (Hyosung Corporation)	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 업부문
분할신설회사	효성티앤씨 주식회사 (Hyosung TNC Corporation)	섬유/무역 사업부문
	효성중공업 주식회사 (Hyosung Heavy Industries Corporation)	중공업/건설 사업부문
	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 (Hyosung Advanced Materials Corporation)	산업자재 사업부문 (안양사업장 관련 사업부문 제외)
	효성화학 주식회사 (Hyosung Chemical Corporation)	화학 사업부문

## 2. 분할의 진행경과

2018년 1월 3일	이사회 결의(회사분할 승인)
2018년 4월 27일	주주총회 결의(분할계획서 승인)
2018년 4월 30일 ~ 2018년 5월 31일	구주권 제출기간
2018년 6월 1일	본건 분할 기일
2018년 6월 1일	이사회 결의(창립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)

- 공고일: 2018년 6월 1일(금)
- 공고방법: 상법 제289조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  
공고 (<http://www.hyosungChemical.com>)

2018년 6월 1일

효성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준 형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(반포동)